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 입주자모집공고

We've THE ZENITH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04.04.(금)]

▣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는 홈페이지(https://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n49.com)를 통해 분양일정안내,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청약 및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접수, 공급계약 등 주요 분양일정에 일반 고객의 견본주택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4.04.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자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1년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Ⅱ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감리회사 현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시행사		시공사	자금관리자	감리회사명 및 감리금액		
				건축	전기	소방
센트럴엔49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앤아이건설그룹	두산건설 주식회사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린디앤씨	㈜아이비엔지니어링	동양종합엔지니어링(주)
284111-0243596	284111-0261374	110111-0194277	110111-7126835	3,937,967,000	820,633,000	1,217,166,739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Ⅲ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	계약 체결
	기관추천, 다자녀가구,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일정	2025.04.14(월)	2025.04.15(화)	2025.04.16(수)	2025.04.22(화)	2025.04.24(목) ~ 2025.04.27(일) / 4일간	2025.05.06(화) ~ 2025.05.08(목) / 3일간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사 견본주택 방문 (10:00 ~ 16:00)	당사 견본주택 방문 (10:00 ~ 16: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59-10) • 문의 : ☎1600-4935 ※ 자격확인서류 및 예약관련 사항은 당사홈페이지 참고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일체 반환 불가**	

Ⅳ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청 주택과 -7470호(2025.04.0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660-6번지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5층, 지상 49층, 3개동 I 총 54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98세대(기관추천 54세대, 다자녀가구 54세대, 신혼부부 125세대, 노부모부양 16세대, 생애최초 49세대) 포함]

▣ 입주예정일 : **2029년 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입주지정 개시일 1개월 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104	01	074.9915A	74A	74.9915	29.1615	104.1530	49.6670	153.8200	12.1552	82	8	8	19	2	7	44	38	2
	02	084.9515A	84A	84.9515	34.8245	119.7760	56.2635	176.0395	13.7696	230	23	23	53	7	21	127	103	6
	03	084.8748B	84B	84.8748	33.6401	118.5149	56.2126	174.7275	13.7572	164	16	16	38	5	15	90	74	4
	04	084.9827C	84C	84.9827	33.6030	118.5857	56.2841	174.8698	13.7747	66	7	7	15	2	6	37	29	2
	05	166.6469P	166P	166.6469	77.9544	244.6013	110.4199	355.0212	27.0169	2	-	-	-	-	-	-	2	-
	06	171.9426P	171P	171.9426	73.6646	245.6072	113.8779	359.4851	27.8699	2	-	-	-	-	-	-	2	-
	07	173.9202P	173P	173.9202	81.5202	255.4404	115.1877	370.6281	28.2017	2	-	-	-	-	-	-	2	-
합계										548	54	54	125	16	49	298	250	14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별 (라인별)	층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계약시)	2차 2025.06.09	1차(10%) 2026.02.23.	2차(10%) 2026.12.22.	3차(10%) 2027.06.22.	4차(10%) 2027.12.22.	5차(10%) 2028.04.24.	6차(10%) 2028.08.22.	입주지정일
74A	82	102동 3호 103동 3호	6층	2	92,998,400	491,001,600	-	584,000,000	10,000,000	4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175,200,000
			7~9층	6	96,024,100	506,975,900	-	603,000,000	10,000,000	5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180,900,000
			10~14층	10	98,253,500	518,746,500	-	617,000,000	10,000,000	5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185,100,000
			15~19층	10	100,164,400	528,835,600	-	629,000,000	10,000,000	5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188,700,000
			20~24층	10	102,075,300	538,924,700	-	641,000,000	10,000,000	5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192,300,000
			26~29층	8	105,101,000	554,899,000	-	660,000,000	10,000,000	5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198,000,000
			30~34층	10	107,171,100	565,828,900	-	673,000,000	10,000,000	5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201,900,000
			35~39층	10	109,241,300	576,758,700	-	686,000,000	10,000,000	5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205,800,000
			40~44층	10	111,152,200	586,847,800	-	698,000,000	10,000,000	5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209,400,000
			45~47층	6	112,266,900	592,733,100	-	705,000,000	10,000,000	6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211,500,000
84A	230	101동 1호·4호 102동 1호·5호 103동 1호·5호	6층	6	103,827,000	548,173,000	-	652,000,000	10,000,000	5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195,600,000
			7~9층	18	107,330,400	566,669,600	-	674,000,000	10,000,000	5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202,200,000
			10~14층	30	109,719,000	579,281,000	-	689,000,000	10,000,000	5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206,700,000
			15~19층	30	111,948,400	591,051,600	-	703,000,000	10,000,000	6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210,900,000
			20~24층	30	114,177,900	602,822,100	-	717,000,000	10,000,000	61,700,000	71,700,000	71,700,000	71,700,000	71,700,000	71,700,000	71,700,000	215,100,000
			26~29층	24	117,681,200	621,318,800	-	739,000,000	10,000,000	63,900,000	73,900,000	73,900,000	73,900,000	73,900,000	73,900,000	73,900,000	221,700,000
			30~34층	30	119,910,600	633,089,400	-	753,000,000	10,000,000	6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225,900,000
			35~39층	30	122,140,100	644,859,900	-	767,000,000	10,000,000	66,70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230,100,000
			40~44층	20	124,369,500	656,630,500	-	781,000,000	10,000,000	68,100,000	78,100,000	78,100,000	78,100,000	78,100,000	78,100,000	78,100,000	234,300,000
			45~47층	12	125,484,200	662,515,800	-	788,000,000	10,000,000	6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236,400,000
84B	164	102동 2호·4호 103동 2호·4호	6층	4	102,871,500	543,128,500	-	646,000,000	10,000,000	5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193,800,000
			7~9층	12	106,215,700	560,784,300	-	667,000,000	10,000,000	56,700,000	66,700,000	66,700,000	66,700,000	66,700,000	66,700,000	66,700,000	200,100,000
			10~14층	20	108,604,300	573,395,700	-	682,000,000	10,000,000	5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204,600,000
			15~19층	20	110,833,700	585,166,300	-	696,000,000	10,000,000	5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208,800,000
			20~24층	20	113,063,200	596,936,800	-	710,000,000	10,000,000	6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213,000,000
			26~29층	16	116,407,300	614,592,700	-	731,000,000	10,000,000	6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219,300,000
			30~34층	20	118,636,700	626,363,300	-	745,000,000	10,000,000	6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223,500,000
			35~39층	20	120,866,100	638,133,900	-	759,000,000	10,000,000	6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227,700,000
			40~44층	20	123,254,800	650,745,200	-	774,000,000	10,000,000	67,400,000	77,400,000	77,400,000	77,400,000	77,400,000	77,400,000	77,400,000	232,200,000
			45~47층	12	124,369,500	656,630,500	-	781,000,000	10,000,000	68,100,000	78,100,000	78,100,000	78,100,000	78,100,000	78,100,000	78,100,000	234,300,000
84C	66	101동 2호·3호	6층	2	102,871,500	543,128,500	-	646,000,000	10,000,000	5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193,800,000
			7~9층	6	106,215,700	560,784,300	-	667,000,000	10,000,000	56,700,000	66,700,000	66,700,000	66,700,000	66,700,000	66,700,000	66,700,000	200,100,000
			10~14층	10	108,604,300	573,395,700	-	682,000,000	10,000,000	5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204,600,000
			15~19층	10	110,833,700	585,166,300	-	696,000,000	10,000,000	5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208,800,000
			20~24층	10	113,063,200	596,936,800	-	710,000,000	10,000,000	6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213,000,000
			26~29층	8	116,407,300	614,592,700	-	731,000,000	10,000,000	6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219,300,000
			30~34층	10	118,636,700	626,363,300	-	745,000,000	10,000,000	6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223,500,000
			35~39층	10	120,866,100	638,133,900	-	759,000,000	10,000,000	6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227,700,000
166P	2	101동 1호·2호	40층	2	318,328,600	1,527,883,090	152,788,310	1,999,000,000	10,000,000	189,900,000	199,900,000	199,900,000	199,900,000	199,900,000	199,900,000	199,900,000	599,700,000
171P	2	102동 1호 103동 1호	48층	2	325,813,100	1,563,806,270	156,380,630	2,046,000,000	10,000,000	194,600,000	204,600,000	204,600,000	204,600,000	204,600,000	204,600,000	204,600,000	613,800,000
173P	2	102동 2호 103동 2호	48층	2	336,800,900	1,616,544,630	161,654,470	2,115,000,000	10,000,000	201,500,000	211,500,000	211,500,000	211,500,000	211,500,000	211,500,000	211,500,000	634,500,000

▣ 분양대금 납부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광주은행	1107-021-784271	신영부동산신탁(주)

Ⅴ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 특별공급 공통사항 및 신청자격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 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I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I 신혼부부 특별공급 I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일반공급 공통사항 및 신청 자격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 점수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40% / 60% 전용면적 85㎡ 초과 / - / 100%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남양주시/경기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Ⅵ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및 중도금대출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7912025-101-0000500 호	₩ 279,874,0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시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월 이자납입일까지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월 이자납입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 약관에 따르며, 본 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분양 문의 1600-4935

http://두산위브더제니스평내호평역n49.com

시행 : 센트럴엔49피에프브이㈜, ㈜유앤아이건설그룹
시공 : 두산건설(주)

일반분양 548세대 74㎡ / 84㎡ / 166㎡ / 171㎡ / 173㎡